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·입학자격 등에 관한
기준(제18조제2항 관련)

구분	훈 련 시 설	입 학 자 격	훈 련 기 간	교과편성기준
1. 양성 훈련	가.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.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양성훈 련과정 설치·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 설	「고등교육법」 제33조제1 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 격이 있는 사람	4년	「고 등 교 육 법」 제21조에 따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2. 향상 훈련	가.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.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향상훈 련과정 설치·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 설	가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 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상위 등급을 취득하려는 사 람	1주 이상	훈련교사 1급과 정과 2급과정으 로 편성
3. 교직 훈련	가.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.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훈련과 정 설치·운영의 승인 을 받은 훈련시설	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	1주 이상	교양과 교직 영 역으로 편성